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사 명칭 변경〉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55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홍기원 · 전진숙 · 송옥주 · 한민수
박홍배 · 민병덕 · 허 영 · 박해철 · 최혁진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 의안번호 : 1575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

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50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¹⁾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u>간사</u> 1명을 둔다.	제50조(수석위원) ① ----- -----수석위원-----.
② <u>간사</u>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u>수석위원</u> 은-----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u>간사</u> 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 -----수석위원이-----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u>간사</u> 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 -----수석위원-----.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u>간사</u>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u>간사</u> 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수석위원----- -----수석위원-----.

1) ○그 밖의 개정조문: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제2항, 제49조(위원장의 직무)제2항,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제2항·제4항·제5항,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4항,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제1항, 제67조(위원장의 보고)제3항, 제69조(위원회 회의록)제3항, 제82조의2(입법예고)제1항,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3항,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제1항·제3항,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제4항,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제3항

○다른 법률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 간사 인용 조문

현행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²⁾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부터 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³⁾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입법예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표-2] 「국회법」에 따른 간사의 역할

□ 위원장과 간사 협의사항

-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허가(국§32의5②)
-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국§49②)
-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국§57의2⑤)
-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당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국§58④)
- 위원의 발언시간 결정(국§60①)
-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국§82의2①)
-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 시간 할당(국§84③)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 생략(국§86①)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국§86③)
- 국무위원 등의 대리 출석·답변 허가(국§121④)
- 폐회 중 위원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해 요구(국§128③)

2) 간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별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입법예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역할을 함(국회사무처, 「쉽게 풀어 쓴 의회용어」, 2018, p.22).

3) 「국회법」(1948. 10. 2. 제정) 제19조 위원회에는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간사를 둔다.

□ 위원장과 간사 합의사항

- 안전조정위원회 활동기한(국§57의2②)
-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조정위원의 수 결정(국§57의2④)
- 의안의 자동상정 간주 미적용(국§59의2)

□ 위원장 직무대리 및 직무대행

-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국§50③)
- 위원장 궐위 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대리(국§50④)
-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직무대행(국§50⑤)

□ 그 밖의 간사 역할

-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 보고 시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 보고(국§67③)
- 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국§69③)

그런데, 간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⁴⁾을 의미하여 현행 국회관계법에 따른 간사의 역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다수의 법령에서 간사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한편, 우리 국회의 간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국 의회의 직위 명칭을 살펴보면, 미국은 ‘ranking member(간사)’, 프랑스 ‘vice president(부위원장)’, 독일 ‘obmann(간사)’, 일본 ‘理事(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⁶⁾⁷⁾

[표-3] 주요국 의회의 위원회 직위 명칭

구 분	명 칭	비 고
미국	○ 위원장(chairman) ○ <u>간사(ranking member)</u>	○ 별도로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갖고 있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사실상의 원내교섭단체 기능 ○ 다수당: 위원장, 소수당: 간사(보통 최다선 의원)
영국	○ 위원장	○ 별도로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프랑스	○ 위원장(president) ○ <u>부위원장(vice president)</u> (3-4명) ○ 서기위원(Secretaire) (4명)	○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의원 ○ 부위원장·서기위원: 2명은 다수당이, 나머지 2명은 소수당에서 맡음(부위원장이나 서기위원이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하여 각 1명씩 선출되는 것은 아님).
독일	○ 위원장 ○ 부위원장 ○ <u>간사(Obmann)</u> · 대변인 (각 1명)	○ 독일 하원은 의회운영과 입법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강력한 의회 ○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Obmann)와 대변인을 두고 있음.
일본	○ 위원장 ○ <u>이사(理事)</u> (1명 또는 복수)	○ 교섭단체 기능을 하는 ‘회파’별로 이사를 1명씩 선임하는 것은 아님. ○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6)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및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위원회 간사 호칭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2014. 9. 5. ; 「미국 의회의 간사 제도 사례」,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2026. 1. 16. ; 「영국 의회의 위원회 구성원 직위 사례」,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2026. 1. 20. ; 「프랑스 하원의 위원회 구성원 직위 사례」, 2026. 1. 20. ; 「독일 의회의 위원회 구성원 직위 사례」,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2026. 1. 26. ; 「일본 국회의 위원회 간사 유사 직위」, 국회도서관 의회정보회답, 2026. 1. 29.).

7) 참고로, 일반적으로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위원장은 Chairperson)을 사용하고 있음(국회사무처, 「의회외교 영문 표기집」, 2024, p.25).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간사’라는 명칭이 그 지위의 대표성 및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현행 국회관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017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9) 간사 명칭 변경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714	이재정의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